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구자근 • 박덕흠 • 김선교

권영세 • 박준태 • 김성원

강대식 • 신동욱 • 인요한

유상범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의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들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고통과 피해가 야기되었음.

그런데 천안함 피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인하여 천안함 승선 장병 및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천안 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 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피해구 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의 원칙)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경 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치료를 포함한다)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고, 그 감면 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 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 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비 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천안함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천안함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천안함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
 - 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다. 그 밖에 공공연하게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 고 있는 생존 장병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 원할 수 있다.